

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[전문개정 1992. 12. 3
조례 제2233호]

일부개정 1994. 4. 12 조례 제2267호
일부개정 1994. 8. 8 조례 제2281호
일부개정 2003. 10. 14 조례 제2652호
일부개정 2013. 8. 7 조례 제3102호
(제명개정)
전부개정 2017. 9. 14 조례 제3413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8. 3. 7 조례 제3455호
(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0. 12. 16 조례 제369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및 제18조의6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①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12. 16>

1. 일반직공무원인 의사: 별표 1
2.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: 별표 2
3. 보건진료직렬공무원: 별표 3

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,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·검역·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. <신설 2020. 12. 16>

제3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,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·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8. 3. 7>

제4조(직급보조비)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월 300,000원

으로 한다.

부칙 〈2017. 9. 14 조례 제3413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8. 3. 7 조례 제3455호,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
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0. 12. 16 조례 제369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지 급 액	월 1,091,000원 이하	월 1,010,000원 이하

※ 비고 :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2] <개정 2020. 12. 16>

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

등 급 별 근무연수별	5 급 이상	6 급 이하
5 년 이 상	월 1,312,000원	월 973,000원
4 년 이 상	월 1,306,000원	월 967,000원
3 년 이 상	월 1,300,000원	월 961,000원
2 년 이 상	월 1,295,000원	월 956,000원
2 년 미 만	월 1,289,000원	월 950,000원

※ 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.

[별표 3]

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

지급대상지	지급액
고문 진료소, 양원 진료소, 늘목 진료소, 노곡 진료소, 마전 진료소, 동중 진료소, 횡산 진료소	월 250,000원

※ 비고 : 지급대상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
[별표 3의2] <신설 2020. 12. 16>

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(제2조제2항 관련)

지급대상	지급액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	월 500,000원

[별표 4] <개정 2018. 3. 7>

장려수당 지급기준표

지급대상	지급액
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	월 120,000원
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	월 150,000원
시체화장 또는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·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	월 180,000원